

# 예 산 총 칙

2020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13,122,000	27,393,660
일반회계	829,000,000	24,870,000
특별회계	84,122,000	2,523,660
공기업특별회계	56,800,000	1,704,000
수도사업특별회계	30,600,000	918,0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6,200,000	786,000
기타특별회계	27,322,000	819,660
수질개선특별회계	6,953,000	208,59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830,000	84,900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	1,511,000	45,33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3,009,000	90,27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664,000	19,920
치수사업특별회계	1,097,000	32,910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500,000	15,000
주차장특별회계	10,758,000	322,74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2,288,106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2,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